

[사]대한산업안전협회 비상임감사 공개모집

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”인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감사를 모십니다.

2024년 9월 6일

[사]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 대상 및 주요 직무

- 대상 및 인원 : 비상임감사 1명
- 임기 : 2년 (협회 정관 제14조(임원의 임기)에 따름)
- 주요 직무 : 협회의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등에 대한 감사

2 응모자격

포괄적 자격 요건	○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사람 ○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○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갖춘 사람 ○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		
필수요건	○ 「대한산업안전협회 정관」 제15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		
구체적 자격 요건	학력기준	○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○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	
	자격증 기준	○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	
	경력 기준	공무원	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	민간 경력	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실적기준	○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,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		

※ 관련분야 : 노동 및 산업관련 행정, 경영, 조직·인사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

※ 비고 1. 구체적 자격요건은 학력기준, 자격증기준,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2.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,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연구소, 민간기업(비상장 포함), 시민단체, 프리랜서 등 개인활동 경력을 말함

3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

- 서류제출 : 2024. 9. 6.(금) ~ 2024. 9. 12.(목) 18:00까지(7일간)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 - ※ 제출처 : (우)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,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국
 - ※ 방문접수는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, 2024. 9. 12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※ 우편접수는 2024. 9. 12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4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

-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자기진단서 각 1부
 - ※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
- 증빙자료 각 1부
 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졸업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 또는 학위증(해당자에 한함)
 - 지원서 등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-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
 - ※ 해당 경력, 학력 또는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 - ※ 공모 직위 중 1개의 직위에만 응모 가능

5 심사방법

-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
 - 1차 : 서류심사(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)
 - 2차 :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등 개별 통지)
- ※ 심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개하지 않음

6 결격사유(정관 제15조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 기타

- 제출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지원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예정임
- 우리 협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, 제18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) 및 시행령 제34조(취업승인)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(취업승인신청)하여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
 - ※ 면접심사(10월 예정) 까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임원추천이 취소됨
-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국(02-860-7164)로 문의하시거나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를 참조 바람